##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귀가한 경우

진료ㆍ 간호한 경우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

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3)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 AA154-AA157은 155.57점, AA100, AA109는 152.11점, 10100

은 152.06점, 재진의 경우 AA254-AA257은 98.03점, AA200, AA209, 10200은 95.98점)와 외래관

- (4)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 본다.
  - (5)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 (6)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7)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진료담당의사가 검사 · 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 ·

방사선 진단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 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원료등(입원료 · 무균치료실입원료 · 낮병동입원료 · 신생아입원료 · 중환자실입원료 · 격리실입원료 · 납차 폐특수치료실입원료)

마.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 ·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u>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u>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1)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2) 낮병동 입원료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나)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3) 신생아 입원료: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모자동실(모자동실입원료)에서

(4) 중환자실 입원료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 ·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ICU)이 설치된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일반중환자실 입원료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 에서 진료한 경우 (5) 격리실 입원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Q. HRT시 페경기전후 장애 상병쓰는데, 이것도 만성질환으로 들어가나요? 환자분이 안젤릭 한달 처방받고 그 다음 달에 오셔서(한달 조금 넘어) 초진으로 되었은데 처방내리니 이번 청구에서 재진으로 삭감조정되더라구요.. 그래서

Q. HRT 3달치 처방받고 다음에도 계속 HRT처방을 받기위해 방문하시는분은 초진 or 재진 ?

Q. HRT관리 받으시는 분이 혈액검사상 고지혈증이 관찰되어 치료하는 경우는? 초진 or 재진

<mark>재진</mark>.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임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경우 • 즉 상병을 두개 넣은 경우네는 재진에 해당
  - 고지혈증 상병만 넣고 N951 상병으로 진찰 받은지 한달이 넘은 경우.

• 또는 상병을 고지혈증만 넣는다 해도 30일 이내라면 재진

폐경치료도 만성질환으로 들어가는 지 궁금해서요?

재진

재진

종결되었을때를 말함

Q. 2월 1일 질염환자가 3월1일에 다시 질염으로 재발되어 왔다면? 초진 or 재진

Q. 한달 이내에 트리코모나스 질염과 캔디다 질염으로 각각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면? 초진 or 재진 <mark>재진.</mark>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조지.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치료의 종결이라 함음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우언이 종경되었거나, 투약이

- Q. 엄청나 산부인과의 엄청난 선생님에게 진료를 본 환자가 한달이 채 안되어서 같은 산부인과 더엄청난 선생님이. 다른 상병으로 진료 받는 경우? 초진
  - 재진의 조건 : 같은 진료과목, 같은 병원이지만 같은 상병이 아니므로 초진 • 초재진 구분의 3대 기준

1. 상병이 같으냐? 다르냐?

- 2. 같은 병원이냐? 아니냐? 3. 같은 진료과목 의사이냐? 아니냐?[같은 선생님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